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0일, 김태선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12.4.)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국가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하여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행정기본

법」 제36조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은 계약상대자 권리 확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국가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하여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은 계약상대자 권리 확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행정기본법」 제36조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28조제5항 삭제).
- 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함 (안 부칙 제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5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의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u>20일</u>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u>15일</u>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 ----- ----- ----- <u>30일</u> ----- ----- ----- <u>2</u> <u>5일</u> -----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u>20일</u>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 ----- ----- <u>30일</u>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⑤ 제2항부터 제4</u>	<u><삭제></u>

<u><신 설></u>	<u>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부칙 ----- -----3개월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15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 음)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 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 터 <u>20일</u>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u>15일</u>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 야 한다.	② ----- ----- --- <u>30일</u> ----- ----- <u>25일</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 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u>20일</u> 이내에 제29조에 따 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 --- <u>30일</u> ----- ----- ----- -----.